

농산물규격출하 사업

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·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, 견본, 통명거래,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과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정선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.

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·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, 견본, 통명거래,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과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정선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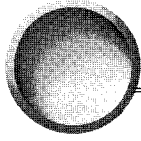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00. 2. 1. ~ 2. 10. (10일간)
- 지원대상 :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(농협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독농가 등)
- 사업내용
 - ◇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: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이 제정된 품목 (단, 양곡류 제외)
 - ◇ 농산물 소포장재사업 : 10kg단량 이내 소포장으로서 농가 자율적 제작
- 지원조건 : 포장자재비의 30%지원으로서 사업량이 생산자조직에서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 10a당 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과다 신청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신청방법 :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읍·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신청
 - 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·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나 군청 농림과(☎ 02-560-23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농산물 규격출하

1. 목적

가.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

- ◇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·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, 견본·통명거래,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



나.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

- ◇ 바코드 부착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·통명거래 기반 구축
- ◇ 공동계산조직 및 친환경·품질인증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생산자조직의 유통활성화와 안전농산물의 지속적 공급 실현

다.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

- ◇ 비포장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유도로 공정·투명거래 정착
- ◇ 유사도매시장과 차별화 추진으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가.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

- ◇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
- ◇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
- ◇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
- ◇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

나.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

- ◇ 농산물 표준바코드 부착출하 촉진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·통명거래 기반 조기구축
- ◇ 공동계산조직 육성·지원을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물류비절감
- ◇ 친환경·품질인증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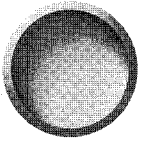
다.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

- ◇ 비포장 농산물에 대한 규격출하 촉진 및 공정·투명거래 정착
- ◇ 공영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개선과 도매시장 활성화 유도

3. 근거법령

가.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,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의 포장재 지원

- 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(표준규격화)
- ◇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 제71조(규격화의 촉진 등)



나.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

- 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(표준규격화), 제5조(품질인증), 제31조(자금지원 및 우선구매),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(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지원)
- ◇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(유통정보화의 촉진)

4. 지원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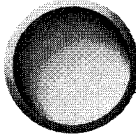
| 구 | | 분 | '92~'98 | '99 | 2000 | 2001예산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포장화 미흡품목 | 사업비 | 사업량(천매) | 639,000 | 191,000 | 187,000 | 184,000 |
| | | 계(백만원) | 325,357 | 129,727 | 138,380 | 156,400 |
| | | 국 고 | 56,020 | 40,749 | 41,514 | 46,920 |
| | | 지방비 | 54,446 | 12,897 | - | - |
| | | 자부담 | 214,891 | 76,081 | 96,866 | 109,480 |
|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| 사업비 | 사업량(천매) | - | - | - | 77,000 |
| | | 계(백만원) | - | - | - | 57,750 |
| | | 국 고 | - | - | - | 17,325 |
| | |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| | 자부담 | - | - | - | 40,425 |
|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| 사업비 | 사업량(천매) | - | - | - | 11,454 |
| | | 계(백만원) | - | - | - | 8,590 |
| | | 국 고 | - | - | - | 2,577 |
| | |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| | 자부담 | - | - | - | 6,013 |

5. 사업비 배분

가. 포장화 미흡품목

(1) 시·도별 예산 배분기준

- ◇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, 전년도 사업량, 당해년도 사업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
- ◇ 전전년도 예산불용, 전년도 부적정 지원 시 도는 해당액 감액
 - 전전년도 불용액 발생, 전년도 사업의 지원기준 위반,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추진 실태가 좋지 않은 시 도는 예산 감액



- ◇ 우수 시·도는 특별지원 : 예산의 10%이내
 -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·도에 특별지원
 - 전년도 사업비의 차등지원 실시 등 사업추진 우수 시·도는 특별지원

(2) 항목별 반영 비율

| 항목별 |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 | 전년도 사업량 | 당년도 사업신청량 | 계 | 사업추진에 따른 증감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불용액 발생 | 평가 결과 |
| 배분비율 | 70% | 20% | 10% | 100% | 5%이내 | 5%이내 |

※ 시·도의 사업신청량 이내로 배분하되, 2001년도 사업비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2000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한 다음,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 우수 시·도에 추가 배분

(3) 사업추진 실태에 따른 증감 세부기준

- ◇ 감액
 - 불용액 발생시 : 당초 예산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을 적용하되, 최대 5%까지 감액
 - 사업추진 실태 평가 :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1회당 0.1%, 총 지원건수 대비 지원기준 위반건수 비율을 적용하되, 최대 5%까지 감액
- ◇ 증액(7개 특별·광역시와 9개도로 구분)
 -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·도 : 불용액 발생 부분 감액분 만큼 증액
 - 규격출하사업 추진 우수 시·도 : 사업추진실태 평가결과 감액분 만큼 증액
 - 시·도의 사업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총 지원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적은 우수 시·도 3개를 선정
 - 감액분을 1위는 5할, 2위는 3할, 3위는 2할로 나누어 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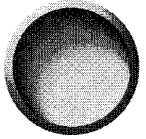
나.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

(1) 시·도별 예산 배분기준

- ◇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,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실적(생산계획량) 등을 기준으로 배분
- ◇ 공동계산물량은 전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량을 기준으로 배분

(2) 항목별 반영 비율

| 항목별 | 전년도 및 당해년도 공동계산물량 |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 | 전전년도 친환경농산물 표(생산계획량) 시사용신고실적 | 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배분비율 | 10% | 70% | 20% | 100% |



다.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

(1) 예산 배분기준

- ◇ 전전년도 도매시장 반입억제 품목의 도매시장 포장품 반입실적 및 종합 유통센터(물류센터) 포장품 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

(2) 항목별 반영 비율

- ◇ 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의 포장품 반입량을 동일하게 적용

6. 2001 사업실시요령

< 사업개요 >

가. 사업내용 설명

(1) 배경

<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>

- ◇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유통비용 절감
- ◇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신용·공정거래를 촉진
- ◇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·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
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- ◇ 농산물에 표준바코드 부착·유통으로 디지털 유통기반 조기구축
- ◇ 공동계산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
- ◇ 친환경·품질인증 생산자조직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

<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>

- ◇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유도로 규격출하 촉진
- ◇ 농산물의 공정·투명거래 정착 및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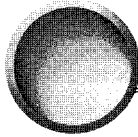
(2) 지원대상

<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>

- ◇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 조직(농협, 작목반, 작목회, 영농조합법인 등),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.
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- ◇ 농산물을 규격출하·공동으로 계산하는 조직(농협, 작목반, 작목회, 영농조합법인 등),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·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



<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>

◇ 공영도매시장,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

(3) 사업내용

◇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카 포함), P.E대, P.P대 등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(국고보조 30%, 자부담 70%)

- 겉포장내의 속포장을 포함하며,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표준거래 단량 이면서 농산물표준포장치수(총 87개 모델)
- 스티로폼 상자는 2002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

(4) 대상품목

<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>

◇ 적용품목 :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(단, 양곡류 제외)

◇ 우선지원 대상품목

- 알타리무, 열무, 열갈이배추, 파(대파, 쪽파 포함), 양파, 수박(조롱수박 제외), 양배추, 감자, 고구마
 -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[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열갈이배추 제외), 마늘]
 -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경우
 -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후 도매시장,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에 출하하는 경우
- 객관적 증빙서류(별지 제3호서식) 제출시 지원 가능

◇ 추가지원가능 품목 : 9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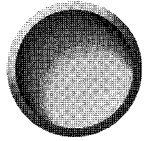
- 우선지원 대상품목 지원후 사업비가 남고, 지역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경우 시·군과 농관원출장소장, 농협 시·군지부장이 합의 선정
- 단, 지역적 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이 표준규격출하가 되지 않는 경우, 그 품목수 만큼 추가 지원 가능품목에 포함
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◇ 적용품목

- 공동계산조직 :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
-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 :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
- 품질인증 조직 :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

<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>



◇ 적용 품목 : 2001년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[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얼갈이배추 제외), 마늘]

(5) 지원기준 및 조건

〈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〉

◇ 우선지원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신청량의 100%를 지원

◇ 추가지원 가능품목은 규격출하품 소비지 품질평가 및 자체품질관리 활동정도 등에 따라 생산자 조직을 평가·분류하여 아래의 조직 등급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지원
 - 사업량은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, 10a당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, 과다 신청된 경우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〈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〉

| 구 분 | 최우수조직 | 우수조직 | 일반조직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평가점수 | 90점 이상 | 70점 이상 | 70점 미만 |
| 지원 사업량 | 신청량의 100% | 신청량의 90~70% | 신청량의 30%이하 |

※ 생산자조직 평가표 : 별첨

〈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〉

◇ 신청 및 제작수량의 100%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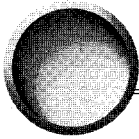
〈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포장재 지원 〉

◇ 출하수량의 100%를 지원

나. 2001 지원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| 내 용 별 | 사 업 량 | 계 | 사 업 비 국고보조 | 자부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천매 | | | |
| 포장화 미흡품목 | 184,000 | 156,400 | 46,920 | 109,480 |
|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| 77,000 | 57,750 | 17,325 | 40,425 |
|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| 11,454 | 8,590 | 2,577 | 6,013 |
| 합 계 | 272,454 | 222,740 | 66,822 | 155,918 |



< 추진체계 >

가. 사업주관 기관 : 시장 · 군수

나. 사업담당 부서

◇ 농림부 : 유통정책과 (02)504-9411~3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: 품질관리과 (031)446-0126~7

◇ 시 · 도 : 농산물유통과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· 도지원 품질관리과

◇ 시 · 군 : 산업과(유통과)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· 군출장소

◇ 농 협 : 농협중앙회, 지역본부, 시 · 군지부

다. 대상자 선정

< 포장화 미흡품목 >

(1) 선정기준

(가) 사업대상자별 최저 한도액 설정

◇ 사업시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한도액 설정 · 운영

-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 한도액 : 100만원(국고)

- 단, 우선지원 품목 사업대상자는 예외

(나) 우선 순위

① 우선지원 대상품목을 규격포장 출하하는 생산자조직,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

②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조직, 우수조직,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

-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생산자조직은 차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, 해당등급별 지원기준을 최대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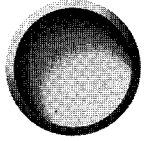
③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조직이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, 그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최우수조직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

④ 평가결과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이 부진하여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은 생산자조직은 시장 · 군수, 농관원 출장소장, 농협시 · 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

⑤ 개인단위 신청자(조직지원 순위적용 방법에 따름)

(2) 선정절차

◇ 생산자조직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읍 · 면을 거쳐 시 · 군에 2001. 1. 10



까지 제출

- 단, 전년도에 신청한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생략
- ◇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지역별 산지유통인연합회장 확인을 필한 다음, 경작지 관할 시·군에 제출
- ◇ 시·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관원에 통보
- ◇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,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, 우수조직, 일반조직(신규조직)으로 분류하여 시·군에 통보(2001. 1월중)
 - 특히,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
- ◇ 시·군은 농관원, 농협시·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·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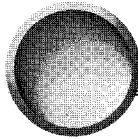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(1) 우선 순위

- ① 공동계산을 하고 있는 생산자조직
(표준바코드 부착시 우선 지원하고, 출하물량이 많은 순으로 지원)
- ②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(유기, 무농약, 저농약, 일반 재배 순으로 지원)
- ③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생산자조직(유기, 전환기유기, 무농약,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)
- ④ 개별농가 단위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(유기, 무농약, 저농약, 일반 재배 순으로 지원)
- ⑤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(유기, 전환기유기, 무농약,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)

(2) 선정절차

- ◇ 생산자조직(개별 품질인증을 받은 자, 개별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 포함)은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()내를 '디지털유통'으로 기재한다)를 읍·면을 거쳐 2001. 1. 10까지 시·군에 제출
- ◇ 시·군은 사업신청내역을 취합하여 품질인증·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에, 공동계산조직은 농협에 각각 통보
- ◇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와 신청조직의 전년도 출하(신고)실적을 기재하여 시·군에 통보(2001. 1월중)
 - 특히,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



부적합으로 기계

◇ 시·군은 농관원, 농협시·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·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
<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>

(1) 우선 순위

◇ 대상품목[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얼갈이배추 제외), 마늘]별 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

(2) 선정절차

◇ 대상품목[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얼갈이배추 제외), 마늘]별 연간 규격출하수량을 감안하여 품목별 자금집행금액 책정

◇ 품목별 책정 금액을 기준으로 규격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

라. 사업 시행

<포장화 미흡품목>

(1) 사업비 집행방법

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또는 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재에 한하여 자금 지원

- 단, 유통능력향상,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, 군수, 농관원출장소장, 농협시·군지부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◇ 사업비 지원절차

-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,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 출장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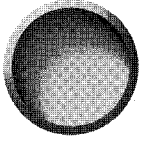
· "표준규격품" 문구, 포장재 중량, 포장재 치수, 포장재 제작연도표시 의무화

- 사업대상자는 시·군에 자금요청을 할 때에는 농관원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품목, 단량, 포장재규격(포장치수 포함), 수량, 단가, 금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및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시·군에 제출

· 사업대상자가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포장재 1매와 시·군에 제출할 증빙서류 사본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시

·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지원대상 포장재의 표시사항, 포장재치수 등이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

- 단,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공영도매시장·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에서 발급한 농산물규격포장출하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시·군에 추가로 제출 하였을 경우에만 포장재비 지원



- 이 경우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증양연합회(지역연합회)를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)의 규격포장재 확인(제작수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)을 받아야 함
- 시장·군수는 농관원의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집행
 - 도매시장 포장출하 우대품목의 경우는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, 도매시장,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 등 출하처의 증빙서류(별지 제3호서식)제출시 자금 집행
 - 사업단가는 포장재의 용적(길이×너비×높이)을 계산하여 아래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납품단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적용

〈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〉

| 구 분 | 40,000cm ³ 미만 | 40,000~50,000cm ³ 미만 | 50,000~60,000cm ³ 미만 | 60,000cm ³ 초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최고사업단가 | 850원/매 | 900 | 1,000 | 1,100 |

※ 그물망, PE포대, PP포대는 매당 450원을 넘을 수 없음

· 보조지원액은 제작매수(사업량범위 이내), 사업단가, 보조비율(30%)을 적용 산출

※ 제작매수가 당초 신청한 수량보다 적을 경우 사업량은 실제제작수량에 사업량 확정시 적용한 생산자조직 등급의 사업량 반영율을 곱하여 재산출하여야 함

(2) 사업계획 변경

◇ 시장·군수는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품목, 사업량,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농관원 출장소장, 농협시·군지부장과 합의하여 변경 시행

◇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는 조직평가를 생략하고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지원

〈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〉

(1) 사업비 집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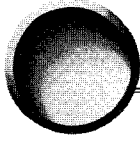
◇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르되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

-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은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(단량), 품질인증 조직은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(단량)을 지원

- 친환경·품질인증품은 포장재중량과 포장재 제작연도표시만 의무화

- 공동계산조직은 관할 농협이 발행하는 공동출하·계산물량 확인서에 의해 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

- 친환경·품질인증 생산자조직은 신청수량보다 적게 제작한 경우 포장재제작수량을 기준으로 포장재비 지원



(2) 사업계획 변경

◇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름
<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>

(1) 사업비 집행방법

(가) 사업비 지원

- 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·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제에 한하여 자금지원(포장화 미흡품목의 절차에 따라 표준규격인지 여부 확인)
- ◇ 시·군 도매시장관리공사(사무소, 이하 공사)와 농협중앙회(종합유통센터)는 각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품목별, 분기별 출하물량과 예산액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시행
- ◇ 사업단가는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르되 출하비용 일부 포함

(나) 사업비 지원절차

◇ 공영도매시장

- 출하자가 포장화 우대품목을 규격포장출하 하여 도매시장 해당 법인에 상장하면 해당법인은 품목별, 규격별 포장재 수량을 확인 한 후 규격출하 지원금액을 경락대금과 같이 지급한 후 해당법인은 확인서(근거자료)를 첨부하여 관할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지급요청
- 포장화 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 경우에는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신고한 물량에 한하여 도매시장 관리자 또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
- 관할 공사는 도매법인(또는 중도매인)의 지급요청서를 검토한 후 자금집행
- 공사는 규격출하 지원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 하여야 함. 단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시 도매시장포장화 우대품목 규격출하 지원금을 우선 지불한 후 정산 가능

◇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

- 출하자는 규격출하 지원 청구서를 종합유통센터에 제출
- 종합유통센터는 입하분에 대해 청구서와 현품을 대사 확인후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원
- 종합유통센터는 규격출하 지원금을 지급한 확인서(근거서류)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요청
-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터 요청내역 확인후 예산범위내에서 시·군에 예산 교부 신청
- 시·군은 농협중앙회로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지원 자금 집행
-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터별로 포장화우대 지원금 정산



< 행정사항 >

가. 사후관리

< 포장화 미흡품목 >

(1)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장 비치

- ◇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별 포장재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, 사본 1부를 농관원출장소장, 농협시·군지부장에게 통보
 - 기록사항: 지원대상자명, 품목명, 조직등급, 재배면적, 생산량,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, 지원금액, 규격출하계획량, 규격출하 실적 등

(2) 사업대상자 교육·홍보

- ◇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
 - 협조: 농관원, 농협
 - 교육내용: 지원대상자의 의무, 규격출하의 필요성, 자율검사방법, 사업추진체계 등
- ◇ 시장·군수는 규격출하사업 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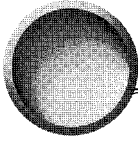
(3) 규격출하 지도·점검 및 평가

- ◇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지도에 활용
- ◇ 농협시·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
- ◇ 농관원출장소장은 소비자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·군, 농협,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
 - 시·군, 농협시·군지부장은 소비자 품질평가결과를 읍·면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
- ◇ 농협시·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, 점검결과를 기록관리
- ◇ 규격출하실적, 점검·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결정시 반영

(4) 제재사항

- ◇ 시장·군수가 생산자조직별 사업량 결정시 농관원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반영이 미흡하거나,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조치하고 이를 우수시·도, 시·군에 추가배정 조치
 - 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장·군수가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시·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
- ◇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

(1) 지원대상 비치

◇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되 기록사항에는 조직등급 대신 조직종류(공동계산조직, 품질인증, 친환경 표시)를 기재

(2) 사업대상자 교육·홍보

◇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

(3) 규격출하 지도·점검 및 평가

◇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되, 친환경·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 출장소장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지도점검

<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 >

(1) 지원대상 비치

◇ 시·군 도매시장 관리자와 농협중앙회(종합유통센터)는 일자별로 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 상황을 기록 보관

- 기록사항 : 지원대상자명, 품목명, 단량, 포장재종류 및 규격, 출하량, 지원수량, 지원금액, 기타 품목별 규격출하 총 수량 등

(2) 교육·홍보

◇ 시·군 도매시장관리공사와 농협중앙회(물류센터)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·홍보 실시

(3) 규격출하 지도·점검 및 평가

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

나. 보고

< 포장화 미흡품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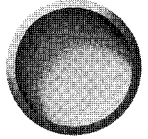
(1)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

(2) 시·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,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
<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>

(1)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와 농협 시·군지부에 통보

(2) 시·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,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


〈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지원〉

- (1) 시장·군수는 도매시장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
- (2)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유통센터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- (3) 시·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,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
다. 기 타

- (1) 이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
- (2) 시장·군수는 각종 특산품전,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

7. 2002년도 사업실시요령

〈포장화 미흡품목〉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읍·면

나. 신청자격

- ◇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(농협, 작목반, 작목회, 영농조합법인,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)
- ※ 농협은 산지유통센터, 청과물종합처리장,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,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

다. 신청절차

- ◇ 규격출하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관할 시·군이 선정한 지원 대상품목(18개)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에 제출
- ※ 단,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우선지원 품목에 한함

라. 구비서류

- ◇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(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)
- ◇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(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)

마. 대상자 선정 : 2001년도와 같음

- 〈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,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〉
- ◇ 2001년도 사업요령에 따른다